

## WTO 次期 林產物協商의豫想爭點 및 影響<sup>1</sup>

朱麟源<sup>2\*</sup> · 李聖淵<sup>2</sup> · 金長政<sup>2</sup>

## New Round of WTO Negotiations on Forest Products : Prospective Issues and Impacts<sup>1</sup>

Rin Won Joo<sup>2\*</sup>, Seong Youn Lee<sup>2</sup> and Wae Jung Kim<sup>2</sup>

### 要　　約

본 연구에서는 차기 林產物協商의 關稅引下가 임산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UR협상 결과와 뉴라운드협상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讓許範圍, 協商基準稅率, 관세인하폭 등 쟁점사항에 기초하여 차기 林產物協商의 關稅引下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關稅引下에 의한 시나리오별 영향은 임업연구원에서 개발한 국내임산물시장분석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차기 林產物協商의 關稅引下는 국내소비량 및 생산량보다 상대적으로 순수입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차기협상의 關稅引下가 합판시장 및 제품의 순수입량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목시장과 제품의 생산량 및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은 1% 미만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關稅引下로 1차 가공제품의 국내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 원목의 국내소비량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원목의 국내생산량 및 수입량은 모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차기협상의 關稅引下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協商基準稅率을 讓許品目의 경우에는 讓許稅率을, 未讓許品目的 경우에는 現行實行稅率로 하고, 이행기간을 연장하고,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WTO 규범내 합법적인 반덤핑, 相計關稅制度 및 緊急輸入制限措置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s of tariff reductions on timber products in the new round of WTO negotiations on domestic timber products markets and presented the measures to minimize their impacts. Scenarios on reductions in tariffs were developed based on result of UR negotiation and prospective issues on scope of tariffs bound, base rates for negotiation, degree of tariff cuts, etc. emerged during preparatory meetings held to launch the New Round of WTO Negotiation. Korea Timber Market Model(KORTIMM) developed by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was used to simulate the impacts on forest products markets by scenario. It was estimated that their impacts on net imports would be much larger than those on both consumption and produ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ir impacts on plywood market and on net imports of processed forest products would be much larger relatively but that their impacts on log market and on consumption and production of processed forest products would be less than 1 percent. It was estimated that log consumption would be reduced due to reduction in domestic production of processed products and thus both production and imports of logs would be reduced as well. In order to minimize the impacts, efforts should be made to start negotiations to reduce tariffs with bound rates for bounded products and with applied rates for non-bounded products, to expand the implementation period and to maintain the

<sup>1</sup> 接受 2001年 5月 28日 Received on May 28, 2001.

審查完了 2001年 7月 3日 Accepted on July 3, 2001.

<sup>2</sup> 林業研究院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Seoul 130-712, Korea.

\* 연락처자 E-mail : joorw@foa.go.kr

status of developing country. In addition, it might be one of countermeasures to use legitimate measures consistent with WTO rules such as anti-dumping, countervailing measures and safeguards.

*Key words : new round of WTO negotiation, issues, impacts, countermeasures, timber products*

## 서 론

우리나라 목재류시장은 1977년부터 1978년까지 개방되었다. 그후 1984년부터 關稅引下讓示制를 통해 미국의 수입자유화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關稅引下를 추진해 왔으며, UR협상을 통해 讓許品目의 비율도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목재류의 關稅引下 및 让許品目 확대에 대한 압력이 UR 이행기간이 1999년 완료됨에 따라 수출국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되고 있다.

UR협상 타결이후 목재류를 포함한 工產品關稅引下에 대한 논의는 1996년 싱가폴에서 개최된 제1차 WTO 각료회의의 준비과정에서 호주가 제안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199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개시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뉴라운드출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99년 제3차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시장접근, 뉴이슈(경쟁, 투자,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등), 이행 및 규범, WTO체제개선 등 각 분야별로 작업반을 구성 뉴라운드출범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각료회의의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뉴라운드의 공식출범에 실패하였다.

비록 뉴라운드의 출범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였으나 뉴라운드의 준비과정에서 공산품의 市場接近을 포함한 분야별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광범위한 분야의 복잡한 의제채택과 협상의 기본 입장에 대한 회원국간의 의견차 심화 및 농산물, 반덤핑, 노동, 투자 및 경쟁정책 등을 둘러싼 각국의 첨예한 대립 등으로 뉴라운드의 조속한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UR 工產品關稅引下의 이행기간이 1999년에 완료되었으며 WTO 일반이사회 등에서 뉴라운드의 출범을 위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 언젠가는 새로운 多者間協商이 개시될 것이고 공산품의 關稅引下는 새로운 多者間協商에서 중요한 협상분야가 될 것이 확실하다.

WTO차기협상과 관련하여 국내의 여러 관련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임업분야에서는 어명근 등(2000)이 WTO 뉴라운드의 關稅分野와 補助金分野에 대한 예상쟁점과 동향을 분석하고 對應方案을 제시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WTO 차기협상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어명근 등(2000)은 WTO 임산물차기협상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關稅引下가 원목, 제재목, 단판, 재생보드류(파티클보드와 섬유판) 및 합판의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한정하여 이를 제품의 국내 생산량 및 소비량 등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않았으며 이와 함께 영향분석에 있어 원목시장과 제품시장의 상호연관성도 고려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차기임산물협상의 예상 쟁점사항에 따른 關稅引下가 우리나라 주요 목재류(원목, 제재목, 합판, 재생보드류) 시장전반에 미칠 潛在的 영향을 검토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對應方案을 제시하였다. 차기 林產物協商의 關稅引下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 UR시 임산물을 포함한 工產品의 關稅引下에 대한 協商結果와 그간 뉴라운드의 출범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공산품의 市場接近과 관련하여 나타난 爭點事項 등을 정리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让許 및 未讓許品目別 協商基準稅率 및 引下幅을 조합한 4개의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차기 林產物協商의 關稅引下에 대한 시나리오별 영향은 임업연구원에서 개발한 국내임산물시장분석모델(KORTI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sup>1)</sup>. 2000년도에 거래된 물량 및 가격을 초기 시장균형상태로 하고, 시나리오별로 關稅引下에 의한 가격변화율을 이용하여 생산량, 소비량, 무역량 등 새로운 市場均衡 물량을 추정하였다. 이렇게 구한 새로운 균형량과 기준년도(2000년도)의 균형량과의 증감량 및 증감율을 계산하여 시나리오별 關稅引下에 의한 영향을 계측하였다.

1) 임업연구원에서 개발한 국내임산물시장분석모델의 모델구조, 수급관계식의 추정방법 및 결과, 수요 및 공급탄력성, 모델의 장단점 등은 주린원과 이성연(1998a) 논문을 참고하기 바라며, 모델에 의한 수급예측 절차 및 방법 등은 주린원과 이성연(1998b)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 林產物關稅引下幅에 대한 UR협상結果

UR협상 때 목재류는 일반공산품에 포함되어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협상결과 讓許品目的 확대 및 상당한 폭의 關稅引下에 합의하였다. UR전후의 공산품에 대한 關稅讓許 비율을 보면 선진국의 경우 78%에서 99%로 증가되었고, 개도국들도 21%에서 73%로 증가되었으며 중앙제회경제체제로부터의 전환경제국가들도 73%에서 98%로 증가되었다(WTO, 1999). 관세인하에 있어서도 UR협상 이전인 1986년 수입액기준 加重平均關稅率을 1/3이상 인하하기로 약속하였다. 1995년 1월 1일부터 1999년까지 5개년에 걸쳐 선진국의 경우에는 공산품의 關稅를 40%, 개도국에 있어서는 33% 감축키로 합의하였다(WTO, 1999).

종이류를 포함한 목재류에 대한 關稅讓許率은 UR협상의 결과 선진국은 100%, 개도국은 65%로 확대되었다(Barbier, 1996). 선진국에 있어서의 關稅引下幅은 UR이전 貿易加重平均 3.5%에서 1.1%로 69% 감축되었고, 개도국에 있어서도 목재류에 대한 關稅率이 감축되었지만 개도국 대부분의 讓許關稅率은 UR이전 關稅率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Barbier, 1995).

한편, 우리나라의 UR협상 대상 임산물(단기소득임산물 제외)은 HS10단위로 200개 품목이었으며 이 중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전품목과 원목의 전나무, 낙엽송, 가문비, 오동나무 등 54개 품목을 제외한 114개 품목이 讓許되어 讓許比率은 72%였으며, 關稅引下幅은 UR이전 대비 57.8%였다. 이러한 임산물의 讓許比率은 우리나라 공산품 전체의 讓許比率인 92%에 비하면 낮은 편이

었으나 關稅引下幅은 오히려 공산품전체의 關稅引下率 54.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UR에 의한 목재류 關稅引下가 목재류 시장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UR협상의 이행 마지막 연도인 1999년도 讓許品目的 實行稅率과 讓許稅率을 비교해 보면 實行稅率이 讓許稅率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 실제 적용되는 관세, 즉 實行稅率은 讓許稅率과 基本稅率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UR시 讓許된 거의 모든 목재류의 實行稅率이 基本稅率과 일치하거나 낮다(표 1). 또한 이러한 實行稅率이 讓許稅率보다 낮은 상태가 차기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목재류에 대한 實行關稅가 UR협상의 讓許關稅보다 낮게 된 이유는 UR협상 이전인 1984년부터 우리나라 關稅引下豫示制(1984-1994)의 시행을 통하여 自發的, 漸進的으로 關稅率을 낮은 수준으로 인하해 왔기 때문이었다. 1983년부터 미국이 대한무역수지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목재류를 포함한 농산물을 위주로 한 미국의 관심품목의 輸入自由化를 요구해 왔고 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は輸入自由化豫示計劃에 의해 輸入自由化를 추진해 왔다. 특히, 1989-1991년 수입자유화추진기간 동안에 임산물 중에서는 미국이 요청한 6개 품목에 대해 전부 輸入自由化 하였으며, 1990-1994년 關稅引下計劃에 의해 미국이 요청한 파티클보드에 대한 關稅를 다른 농산물과 함께 4-5%引下하기로 합의하였다(김규태와 이영주, 1991). 이러한 2차례에 걸친 關稅引下豫示制의 시행에 따라 목재류를 포함한 공산품전체의 1994년 평균 實行關稅率이 7.9%로 인하되었고 UR협상결과 공산품전

표 1. 주요 목재류품목의 관세율 체제(1999).

HS	기본세율			양허세율			실행세율		
	품목수	단순평균	가중평균	품목수	단순평균	가중평균	품목수	단순평균	가중평균
4403(원목)	41	2.0	2.0	31	2.0	2.0	41	0.0	0.0
4407(제재목)	35	5.0	5.0	35	10.0	10.0	35	5.0	5.0
4408(단판)	32	5.0	5.0	32	10.0	10.0	32	2.5	2.5
4409(성형목재)	2	8.0	8.0	2	13.0	13.0	2	8.0	8.0
4410(파티클보드)	3	8.0	8.0	-	-	-	3	8.0	8.0
4411(섬유판)	12	8.0	8.0	-	-	-	12	8.0	8.0
4412(합판)	27	8.0	8.0	-	-	-	27	12.9	12.4

주 1: 가중평균세율은 1999년 수입액에 의한 가중평균 관세율임.

2: 양허세율은 양허품목에 대한 단순평균 및 가중평균 세율임.

3: 실행세율은 원목(0%), 단판(2.5%)의 할당관세와 합판 6mm이상(15%)의 조정관세를 고려한 세율임.

체의 平均 讓許稅率인 8.2%보다 낮아 UR讓許稅率이 關稅率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차기 林產物協商의 시장 접근분야 예상 쟁점

### 1. 讓許範圍 및 關稅引下目標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산품목의 讓許範圍를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U, 홍콩, 호주, 뉴질랜드는 모든 비농업분야를 100% 양허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한 반면 노르웨이와 싱가포르는 보다 폭넓게 讓許하자는 입장이며 일본도 가능한 모든 품목을 讓許하고 제안하였다.

關稅引下目標과 관련하여 뉴질랜드가 가능한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撤廢하고 주장하고 있으며 EU 및 싱가포르는 UR 때보다 인하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동경라운드 및 UR수준의 關稅引下幅을 주장하고 있다.

### 2. 關稅引下方式

關稅引下方式으로는 공식적용방식(formula based approach), 국별·품목별 협상방식(item by item request/offer), 분야별 협상방식(sectoral approach) 등이 있으며, 인하방식에 따라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므로 UR에서도 關稅引下方式을 둘러싼 협상이 오랫동안 전개되었다.

공식적용방식은 인하후 關稅率을 인하전 關稅率의 합수로 나타내는 공식을 정한 후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하여 이 공식을 적용하여 關稅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EU가 주장하고 있는 조화인하방식도 공식적용방식의 한 형태로 關稅率을 몇 개의 대역(band : 무관세, 3-5%, 10-12%, 18-20%)으로 구분하여 高關稅, 傾斜關稅, 微小關稅를 撤廢하고 관세율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식이다. 국별·품목별 협상방식은 회원국들이 관심품목에 대한 讓許要求(request list)와 讓許提案(offer list)을 교환함으로써 讓許品目을 결정하고 關稅引下水準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5차까지의 GATT 하 다자간 협상에서 사용된 바 있다. 분야별 협상방식은 특정품목 또는 산업에 국한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형된 품목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UR에서 미국의 제안으로 이 방식에 의해 일부 품목이 無稅化된 적이 있으며, UR 이후 APEC의

임산물분야에 대한 조기자유화논의도 분야별 협상방식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차기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은 분야별 협상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無稅化 또는 EU가 주장하고 있는 조화인하방식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뉴질랜드는 조기이행 방식에 의한 關稅撤廢를 주장하고 있으며 關稅引下가 불가능한 품목의 경우 공식적용방식 또는 국별·품목별 협상방식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다수 국가들은 공식적용에 의한 일괄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UR에서와 같이 다양한 방식, 즉, 국별·품목별 협상방식 및 무세화방식 등의 혼용을 제안하고 있다.

### 3. 協商基準稅率

미국만이 讓許稅率이 아닌 實行稅率을 關稅引下의 협상 기준세율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基準稅率과 讓許稅率의 격차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이 주장하는 협상 基準稅率을 實行稅率로 하자는 제안은 지금까지 讓許稅率을 기준으로 협상해 왔던 전통을 깨는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실현성은 적어 보인다.

### 4. 高率, 傾斜, 微小關稅率

대부분의 국가들이 高率關稅(tariff peak), 傾斜關稅(tariff escalation), 微小關稅(nuisance tariff)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高率關稅는 평균 관세율을 크게 상회하여 부과되는 관세를 말하며 우리나라 국내 기준으로는 단순평균 관세율의 3배 이상, 국제적으로는 15% 이상의 관세율을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高率關稅에 대한 삭감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高率의 關稅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품목인 만큼 자국의 민감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목재류에는 고관세 품목이 없어 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된다. 微小關稅란 관세율이 아주 낮은 것으로 별로 큰 의미가 없고 절차만 귀찮게 하는 관세를 말한다. 일본 및 호주가 2.5% 이하를, 노르웨이가 2% 이하를 微小關稅로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목에 대한 관세가 2%를 부과하고 있어 微小關稅의 철폐주장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傾斜關稅란 가공도가 높은 품목에 따

라 關稅率이 높은 관세율 구조를 말한다. UR협상 결과 가공도가 높은 목재류 품목들의 관세인하폭이 높아 경사관세의 정도가 대부분의 수입국에서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종이류를 제외한 목재류에 한정할 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 선진국들이 傾斜關稅構造를 가지고 있다.

### 關稅引下 시나리오별 영향분석

#### 1. 시나리오 구성

앞에서 설명한 關稅引下에 대한 UR협상의 결과와 차기 협상의 關稅引下와 관련한 예상방점을 감안하여 원목, 제재목, 단판, 합판, 재생보드류(파티클보드 및 MDF) 등 주요 목제품에 대한 關稅引下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讓許範圍에 대해서는 차기협상에서 未讓許品目을 포함한 모든 품목을 양허한다고 가정하였다. 협상의 基準稅率은 기존의 讓許品目에 대해서는 讓許稅率을 基準稅率로 하였으나 미국이 주장하는 實行稅率을 기준으로 하자는 제안을 반영하여 실행세율을 協商基準稅率로 하는 시나리오도 구상하였다. 그러나 未讓許品目의 경우는 실행세율을 기준세율로 가정하였다. 관세율의 인하폭은 양허품목의 경우 UR시 인하폭을 가정하였는데 UR당시 개도국의 인하폭과 선진국의 인하폭도 고려하였다. 선진국의 인하폭을 고려한 것은 한편으론 관세인하폭을 UR시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한편으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未讓許品目의 관세인하폭은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할 땐 請許品目보다 낮게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되어 UR 당시 농산물에 대한 개도국 및 선진국의 관세인하폭을 가정하였다. 이렇게 請許 및 未讓許品目별 기준세율 및 인하폭의 조합하에 설정한 시나리오는 표 2와 같다.

#### 2. 영향분석 결과

분석대상 목재류에 대한 1999년 수입액 가중평균 현행 實行關稅率과 차기협상의 시나리오별 關稅引下에 의한 請許關稅率은 표 3과 같다. UR에 의해 기 양허된 원목과 제재목, 단판의 관세율은 차기협상에서 請許稅率을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양허세율이 현행 實行稅率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품목에 대해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원목을 제외한 양허품목과 미양허품목의 請許稅率이 현행 실행세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請許稅率보다 높은 實行稅率을 수입품목에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實行稅率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關稅引下 시나리오에 따라 현행 실행관세율을 제재목은 1.6-2.0%포인트, 단판은 0.8-1.0%포인트, 재생보드류(파티클보드와 섬유판)는 1.9-2.9%포인트, 합판은 3.0-4.5%포인트 정도를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별 차기협상에 의한 關稅引下가 분석 대상 품목의 생산량, 소비량, 교역량에 미치는 영

표 2. 차기 林產物協商의 關稅引下 시나리오.

구 분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II		시나리오 IV	
	기준세율	인하폭	기준세율	인하폭	기준세율	인하폭	기준세율	인하폭
양허 품목	양허세율	33%	양허세율	40%	실행세율	33%	실행세율	40%
미양허품목	실행세율	24%	실행세율	36%	실행세율	24%	실행세율	36%

표 3. 시나리오별 관세인하에 의한 차기협상 전후 관세율의 변화(%).

시나리오	HS 4403 (원 목)		HS 4407 (제재목)		HS 4408 (단 판)		HS 4410 (파티클보드)		HS 4411 (섬유판)		HS 4412 (합 판)	
	현행 실행 세율	인하 양허 세율	현행 실행 세율	인하 양허 세율	현행 실행 세율	인하 양허 세율	현행 실행 세율	인하 양허 세율	현행 실행 세율	인하 양허 세율	현행 실행 세율	인하 양허 세율
I	0.0	1.5	5.0	6.7	2.5	6.7	8.0	6.1	8.0	6.1	12.4	9.4
II	0.0	1.3	5.0	6.0	2.5	6.0	8.0	5.1	8.0	5.1	12.4	7.9
III	0.0	0.0	5.0	3.4	2.5	1.7	8.0	6.1	8.0	6.1	12.4	9.4
IV	0.0	0.0	5.0	3.0	2.5	1.5	8.0	5.1	8.0	5.1	12.4	7.9

주 : 현행실행세율 및 인하양허세율은 1999년 수입액 가중평균 세율임.

표 4. 시나리오별 관세인하에 의한 가격변화율(%).

시나리오	HS 4403 (원 목)	HS 4407 (제재 목)	HS 4408 (단판)	HS 4410 (파티클보드)	HS 4411 (섬유판)	HS 4412 (합판)
I	0.00	0.00	0.00	-1.78	-1.78	-2.64
II	0.00	0.00	0.00	-2.67	-2.67	-3.96
III	0.00	-1.57	-0.80	-1.78	-1.78	-2.64
IV	0.00	-1.90	-0.98	-2.67	-2.67	-3.96

향은 표 3의 시나리오별 關稅率 變化值에 의해 계산한 표 4의 품목별 價格變化率<sup>2)</sup>을 이용하여 임업연구원에서 개발한 국내임산물시장분석모델에 의해 추정하였다<sup>3)</sup>. 표 4의 시나리오 I, II에 있어서 원목, 제재목 및 단판의 價格變化率이 0인 것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實行稅率이 차기협상 결과의 讓許稅率보다 낮지만 현재 수입원목 및 단판에 대한 彈力 關稅의 운용과 수입제재목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관세율이 차기 협상타결 이후에도 실제 적용되는 세율이라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하에 시나리오별 關稅引下가 원목, 제재목, 재생보드류(파티클보드와 섬유판), 합판의 생산량, 소비량, 순수입량(수입-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일반적으로 모든 시나리오 및 모든 분석대상 제품에 대해 차기 협상의 關稅引下가 국내 소비량 및 생산량보다 상대적으로 순수입량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1차 가공제품인 제재목, 재생보드류와 합판의

2) 관세인하에 의한 가격변화율은  $[(관세인하후 관세포함수입단가)-(관세인하전 관세포함수입단가)] / 관세인하전 관세포함수입단가 - 1]$ 에 의해 계산하였음(정종인·이한녕, 2000). 즉,

$$\Delta P = \frac{t - t_0}{100 + t_0} \times 100. \text{ 여기서 } \Delta P \text{는 가격변화율(%),}$$

$t_0$ 는 현행 실행관세율(%),  $t$ 는 새로운 실행관세율(%)을 나타냄.

3) 국내임산물시장분석모델은 단판수입량을 외생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시나리오별 단판의 關稅引下에 의한 수입량을 모델에 의해 내생적으로 추정할 수가 없음. 따라서 어명근 등(2000)에 의해 추정된 단판수입의 價格彈力성을 이용해 시나리오별 關稅引下에 의한 단판수입량을 사전에 추정하여 모델에 외생적으로 투입하였음. 어명근 등(2000)이 추정한 단판수입수요함수의 가격탄성치는 -2.08이며, 이는 수입가격이 1% 하락(상승)하면 단판수입량이 2.08% 증가(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단판수입량을 제외하고는 차기협상의 關稅率引下에 의해 기타 다른 외생변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음.

국내 소비량은 關稅率 인하에 의한 국내가격의 하락으로 증가하는 반면 국내 생산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수입량이 상대적으로 큰 폭 증가하여 국내 소비량의 증가분을 수입에 의해 충족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원목의 경우에는 모든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에 따라 생산량과 순수입량도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에도 수입원목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차기 關稅引下 협상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에도 원목의 국내 소비량이 감소되는 이유는 국내 제1차 가공제품의 생산량이 關稅引下에 의한 수입제품과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감소됨에 따라 제1차 가공제품의 원료인 원목의 국내 소비량이 감소되기 때문이며, 원목의 국내 소비량 감소에 따라 원목의 국내 생산량 감소보다는 해외로부터의 수입량이 더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모든 관세인하 시나리오에 대해 합판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 제품에 비해 합판의 實行 關稅率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축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未讓許品目의 경우 調整 關稅를 고려한 현행 實行 關稅率을 협상의 基準稅率로 하는 關稅引下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나 만약 합판의 基本稅率을 협상의 기준세율로 하는 경우에는 표 3에서 보인 합판의 關稅率減縮보다 더 큰 폭으로 관세율을 감축해야 하고 이에 따라 합판의 국내 생산량, 소비량, 순수입량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표 5의 현재 讓許品目인 제재목에 대한 협상 기준세율을 讓許稅率로 하는 시나리오 I과 II의 경우에는 제재목의 關稅率이 차기협상 전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재목의 국내 소비량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생보드류 및 합판의 關稅率引下에 의한 국

표 5. 관세인하 시나리오별 영향.

시나리오	품목	증감량(천 m <sup>3</sup> )			증감율(%)		
		생산량	소비량	순수입량	생산량	소비량	순수입량
I	원목	-1.57	-11.57	-10.23	-0.10	-0.14	-0.15
	제재목	4.78	0.0	-4.78	0.11	0.00	-0.67
	재생보드류	-0.34	11.39	11.72	-0.02	0.47	1.53
	합판	-10.36	22.85	33.21	-1.39	1.40	3.77
II	원목	-2.36	-17.70	-15.34	-0.15	-0.21	-0.23
	제재목	7.17	0.00	-7.17	0.16	0.00	-1.01
	재생보드류	-0.50	17.08	17.58	-0.03	0.70	2.29
	합판	-15.54	34.27	49.82	-2.08	2.11	5.65
III	원목	-8.06	-55.99	-47.93	-0.51	-0.67	-0.71
	제재목	-26.27	36.72	62.99	-0.59	0.71	8.85
	재생보드류	-0.34	11.39	11.72	-0.02	0.47	1.53
	합판	-7.22	22.85	30.07	-0.97	1.40	3.41
IV	원목	-10.21	-71.37	-61.16	-0.64	-0.86	-0.91
	제재목	-30.37	44.44	74.81	-0.68	0.86	10.51
	재생보드류	-0.50	17.08	17.58	-0.03	0.70	2.29
	합판	-11.71	34.27	45.99	-1.57	2.11	5.22

주 : 증감량과 증감율은 2000년 대비 시나리오별 관세인하에 의한 증감량 및 증감율임.

내 생산량의 감소가 원자재인 원목의 소비량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원목의 국내가격이 하락됨으로써 제재목 제조 수익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판단되며 국내 제재목 생산량의 증가로 제재목의 순수입량은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표 5의 시나리오Ⅲ과 Ⅳ의 제재목에 대한 협상基準稅率을 實行稅率로 하는 경우에는 재생보드류 및 합판과 같이 關稅引下에 의한 제재목가격의 하락으로 제재목의 국내 소비량이 증가되고 국내 생산량이 감소되며 순수입량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재목 순수입량이 시나리오Ⅲ의 경우에는 2000년 순수입량 대비 8.85%, 시나리오Ⅳ의 경우에는 10.51% 큰 폭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제재목의 공급 및 需要彈力성이 타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국내 제재목 시장이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고 이와 함께 국내 제재목 생산량 및 소비량수준이 타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 결론

WTO 뉴라운드의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차기林產物協商에서의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讓許範圍 및 關稅引下目標, 關稅引下方式, 協商基準稅率, 高率, 傾斜, 微小關稅率의 撤廢 등이며, 각 쟁점사항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그 나라가 처한 입장 특히, 임산물 수출국인가 수입국인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입장들을 반영하여 차기협상의 關稅引下와 관련된 예상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시나리오별로 關稅引下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격인하에 의해 원목, 제재목, 재생보드류 및 합판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모든 협상 대상 품목이 차기협상에서 謂許된다고 가정하였으며, 關稅引下幅을 謂許品目에 대해서는 UR 때의 개도국과 선진국의 공산품관세 減縮率을, 未讓許品目에 대해서는 UR 때의 농산물에 대한 關稅減縮率을 가정하고 동시에 協商基準稅率을 양허품목은 謂許稅率과 實行稅率, 未讓許品目은 實行稅率로 하여 關稅引下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UR 협상 때 謂許된 원목과 제재목 및 단판의 關稅率은 謂許稅率을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할 때에는 차기협상에 의한 謂許稅率이 現行 實行稅率보다 높게 나타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분석대상 품목에 대해 實行稅率을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현행실행세율보다 인하되는 謂許稅率이 낮게 나타나 현행 관세율을 제품 및 시나리오에 따라 0.8~4.5%포인트 인하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協商基準稅率을 現行 實行稅率로 가정하는 경우 關稅

引下에 의해 제재목가격은 2000년 현재 가격 대비 1.57-1.90%, 단판가격은 0.80-0.98%, 재생보드류 가격은 1.78-2.67%, 합판가격은 2.64-3.96% 하락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기협상의 시나리오별 關稅引下가 원목, 제재목, 재생보드류 및 합판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제품의 경우에는 關稅引下에 의한 가격하락으로 소비량이 증가되고 소비량의 증가분 이상이 수입에 의해 충족됨에 따라 국내 생산량이 감소되고 수입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국내 제품생산량의 감소는 원목의 소비량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국내 원목 가격의 하락으로 국내 생산량 및 순수입량도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록 원목의 국내 생산량이 원목의 수입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할지라도 國內 原木價格의 下落은 國內 山林投資 및 經營에 否定的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차기협상의 關稅引下가 합판의 생산량, 소비량 및 목제품의 순수입량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원목과 제품의 생산량 및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2000년도 대비 1%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關稅引下의 이행기간을 충분히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關稅引下의 충격은 더욱 더 작을 것이며 이와 함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재목과 같이 讓許品目인 경우에는 UR讓許稅率을 협상 基準稅率로 한다면 關稅引下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차기협상에서 새로이 양허될 합판의 경우에는 基本稅率보다는 실제 適用稅率로 하여 關稅引下의 基準稅率을 가능한 한 높이고 동시에 개도국 지위를 유지토록 노력함으로서 關稅引下幅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關稅引下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검토한 關稅引下 방식도 일률적인 공식에 의한 關稅引下보다는 UR 농산물협상 때와 같이 공산품 전체에 대한 관세인하 목표치를 설정토록 하여 품목별 關稅引下幅에 재량의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關稅引下에 민감한 품목에 대한 보호도 가능할 것이다.

WTO 규범내 제도적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차기 林產物協商의 關稅引下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보조금 등 지원제도를 국제규범에 일치시키도록 개선하는

한편 외국으로부터의 不公正 貿易行爲에 대해서는 반덤핑, 相計關稅制度를 적극 활용하고公正한 貿易行爲라도 수입급증으로 인한 國內產業의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WTO가 인정하는 緊急輸入制限措置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국의 環境保護를 가장한 林產物輸出規制에 대응하여 수출입국간의 공정한 무역을 강조함으로써 輸出規制를 撤廢 또는 緩和하도록 요구하는 등 積極的의 대응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취약한 林業 및 林產業分野에서開放速度 및 壓力を 줄이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한시적인 것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차기多者間協商에 대비함에 있어 국내 취약부문의 구조조정을 能動的, 持續的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인용 문헌

1. 김규태 · 이영주. 1991. 미국의 대외시장개방 입례수단 운용현황분석 - 한 · 일 시장개방사례를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239호. 80pp.
2. 어명근 · 석현덕 · 임정빈 · 송유철 · 이명현. 2000. 임업분야 WTO 뉴라운드 대응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C2000-29. 118pp.
3. 정종인 · 이한녕. 2000.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구조 비교분석과 중국의 WTO가입이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 한은조사연구 2000-4. 한국은행조사국. 30pp.
4. 주린원 · 이성연. 1998a. 국내 임산물시장의 추세예측을 위한 계량경제모델 개발. 산림과학논문집 제58호 : 72-92.
5. 주린원 · 이성연. 1998b. 우리 나라 원목, 제재목, 합판시장의 추세 예측. 산림과학논문집 제58호 : 93-103.
6. Barbier, E.B. 1995. Trade in timber-based forest products and the implications of the Uruguay Round. *Unasylva* 46 : 3-10.
7. Barbier, E.B. 1996. Impact of the Uruguay Round on International Trade in Forest Products. On-line at [www.fao.org/waicent/faoinfo/forestry/FOP/FOPH/barbier/B-96-1.htm](http://www.fao.org/waicent/faoinfo/forestry/FOP/FOPH/barbier/B-96-1.htm) (accessed in October, 1999).
8. WTO. 1999. Trading into the Future. 2nd Edition. On-line at [www.wto.org/](http://www.wto.org/) (accessed in March, 2001).